

#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보험료 관련

#### □ 건강보험 보험료도 지원이 되나요?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및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료는 재단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재단의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에서 가입 사무대행 업무 및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누구나 12개월(2021년 7월 ~2022년 6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라면 6개월 동안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2021년 7월~2022년 6월 중 지원 받으려는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에서 주관하는 표준계약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 제출 시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약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는 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 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월의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하거나 미납한 경우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민연금공단 및 제출하신 납부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올해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범위(2021년 7월~2022년 6월 중) 내 예술활동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보험료 납부내역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예술활동 계약기간이 2021년 1월~2021년 12월까지였고, 보험료도 해당기간동안만 납부하셨다면 올해 사업에서 2021년 7월~2021년 12월까지 납부하신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 미납 또는 부분 납부한 보험료는 지원이 어려우며, 완납한 보험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납부내역을 확인 후 보완요청기간 내에 미납금액을 납부하면 추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 계약서 및 계약이행 확인자료 관련

□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공연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이행 확인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하고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적정히 수정 ·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

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http://www.kawf.kr))의 ‘표준계약서 보급’ 페이지에서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주자의 경우,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창작, 출연)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출연료 입금내역을 계약이행 확인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웹툰작가로 2020년 12월에 콘텐츠제공제휴계약을 하고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재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면 계약기간 동안 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기간이 다르며, 연 단위의 사업이므로 매년 사업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기간과 계약기간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납부하신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장기계약에 대해 계약 전당 최대 24개월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21년 사업에서 동일한 계약서로 보험료 지원을 받으셨어도 2022년 사업에 다시 신청하시면 2022년 6월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변경되는 내용(지원기준 등)을 꼭 확인하시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에 소속되어 PD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프리랜서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로 활동한 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자와 프리랜서로 활동한 계약서 둘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서, 근로자로 가입된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계약이행 확인자료(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 사업 신청 관련

**□ 개인신청과 단체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개인신청은 예술인 본인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http://www.kawfartist.kr))을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프리랜서 예술인과 문화예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 국민연금 지역 · 임의가입자인 프리랜서 예술인은 납부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인 예술인은 납부보험료의 40%를 지원합니다.
- 단체신청은 회사(문화예술사업자)에서 소속 예술인들의 동의를 받아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자우편(support@kawf.kr)으로 일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인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해당 예술인에 대해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40%를 각각 지원합니다.

**□ 개인 사업을 하면서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개인으로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체결(또는 표준 계약 교육 이수)했으며, 국민연금 지역 · 임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예술활동 계약서가 있으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예술활동 계약과 보험가입 형태가 일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시 말해, 프리랜서 예술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국민연금 지역 · 임의가입자로 가입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문화예술사업장에 소속되어 예술활동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즉, 카페에서의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이 진행 중일 경우 2022년 지원범위인 6월까지의 급여를 받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사업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8월 31일(수) 오후 6시에 마감 되며 마감 전까지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은 한 번에 하실 수도 있고, 우선 신청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6월까지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한 번에 사업에 신청하셔도 되고, 예산 소진이 우려되신다면 신청시점 까지 준비된 서류로 먼저 사업 신청을 하시고 이후에 받은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Q4

## 예술활동증명 관련

- 사업 신청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방법 중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외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가 있던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는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제출 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만 참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마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표준계약 관련 교육 이수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특례가 아닌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 정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경우 유효기간(1~5년) 동안 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으면 올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 후 완료되어야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고 해당 계약서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한시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2022년에 다시 예술활동증명 특례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5

## 지원금 지급 관련

### □ 사업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접수 후 행정심의 및 지원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다만, 접수 인원 및 접수시점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청자의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접수 후 진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신청자의 경우 신청담당자에게 회신 메일을 통해 지원금 지급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 □ 행정심의 후 지원결정이 되면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나요?

- 지원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4월초에 2021년 7월~2022년 6월까지의 계약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기간이 12개월로 결정되었다면 2021년 7월~2022년 3월(3/4분기~1/4분기)까지의 보험료 지원금(9개월분)을 2/4분기에 우선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2년 4~6월(2/4분기)까지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확인 후에 3/4분기에 남은 지원금(3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만약 6~8월경에 사업 신청을 하였다면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Q6

## 개인 신청자 (프리랜서 예술인)

### □ 안무가로 일주일간 진행하는 공연에 대해 단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달 미만의 계약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 예술인은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에 대해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계약 시작월부터 6개월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 지원하며 여러 건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지원기간이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단기계약 건이 있다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1월과 3월에 단기계약 건이 있다면 1월부터 5월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업작가로 활동하며 전시를 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없나요?

-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표준 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 ·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2021년 7월~2022년 6월 사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표준계약 관련 온 · 오프라인 교육 중 1건의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6개월분의 납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표준계약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10~11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 개인 신청자 [근로자인 예술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2021년 12월까지 애니메이터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원범위인 2021년 7월~2022년 6월 사이에 근무를 하셨다면 현재 퇴사를 했더라도 계약 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 2021년 7월~12월까지의 월별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납부내역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곳의 영화제작사에서 연출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2021년 7월~2022년 6월에 해당한다면 두 건의 계약서와 각각의 월별 급여명세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A제작사에서 2021년 10월~12월(3개월)까지 계약하고, B제작사에서 2021년 2~5월(4개월)까지 계약했다면 총 7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C제작사에서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에 대해 각각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건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산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8

## 단체 신청자 [문화예술사업자 · 근로자인 예술인]

회사[문화예술사업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 직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을 통해 업무내용을 확인하며 예술활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단체에서 사무행정, 교육, 홍보마케팅, 회계·정산,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더라도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오니 공고문(6~7쪽)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고소득 기준과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최근 연간 소득금액이 42백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범위 자체를 고소득으로 간주하고 지원보류 합니다.
- 제출하신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판단하며 소득유형은 종합소득세를 우선으로 합니다.
- 다만, 예산 잔액 발생 시 고소득자 중에서 저소득 순으로 순차지원하며 필요 시에는 급여명세서로 고소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자명단 엑셀파일에 월급여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급여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전 급여를 최저 월급여란에 기재하고 변동 후 급여를 최고 월급여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급여 변동이 여러 번 있을 경우 변동 중 가장 낮은 급여와 높은 급여를 각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Q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 관련

### □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예술인은 모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사업의 보험료 지원범위인 2021년 7월~2022년 6월에 계약이 유효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프리랜서 예술인의 예술활동 계약기간이 2021년 9월~2022년 8월이고 코로나19 피해 발생기간이 2022년 1~4월이라면, 6개월간(‘21년 9월~12월, ‘22년 5월~6월)은 납부보험료의 50%를 지원 받고 4개월간(‘22년 1~4월)은 납부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8월은 2021년 사업의 지원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2023년 사업 공고를 확인하신 후 다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 코로나19로 공연이 연기된 국악인입니다. 사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후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연기되었다면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재단 서식) 및 증빙서류(홍보물, 보도자료, 공문 등) 제출을 통해 실제 공연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자료가 없더라도)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인 예술인]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발레단 단원입니다. 사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근로)계약 체결 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2019년 10~12월(4/4분기)) 평균 월 보수 대비 피해기간 월보수가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입사일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2020년 1월 20일) 이후로, 2019년 4/4분기 급여내역이 없는 근로자인 예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피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었거나 격리대상자가 되어도 급여에 변동이 없으면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화예술사업자 · 근로자인 예술인] 드라마 촬영스태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작사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드라마 제작사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하이고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태프 중 확진 ·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여 드라마 촬영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드라마 제작기간 중 피해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보험료의 80%가 지원되고 피해 발생 전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보험료의 40%가 지원됩니다.